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1. 29 선고 2019가단7724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종윤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동석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1. 8

판결 선고 2020. 1. 29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전 374m²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. 2. 16. 접수 제62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소유이던 순천시 C 전 374m2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4. 7. 31. D영어조합법인(이하 '영어조합법인'이라 한다) 명의로 2014. 7. 16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권이전등기가, 2017. 2. 16. 피고 명의로 2017. 2. 1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가 차례로 마쳐졌다.

나. 원고는 영어조합법인을 상대로 영어조합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였고, 영어조합법인은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호증 내지 갑4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주장

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는 원고가 설립·운영해 온 영어조합법인과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바,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는 무효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설령 원고와 영어조합법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

판사

기각한다.